

서울특별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112
------	------

2021. 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3월 10일, 최영주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3.2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최영주 의원)

1. 제안이유

가. 「예술인 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축제 주최자와 참여 예술인간의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계약체결시

고용보험료 납부,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 축제 참여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노력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또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축제 참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나.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조항 정비(안 제7조제1항~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다. 실무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조문 정비(안 제12조제5항).

라. 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규정함(안 제17조).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축제 개최 시 축제 주최자와 참여 예술인과의 계약의 불공정성을 방지하는 등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출되었음.

나. 개정의 필요성

- 2009년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기여해오고 있으나 예술인들은 예술계에서 여전히 구두상 계약과 불공정 계약조건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단속적(斷續的) 용역계약을 기반으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이에 개정안은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적 타당성이 있음.

다. 주요내용

1)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제2항)

- 개정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따라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관련 입법 취지에 부합됨.

2) 축제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축제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사항임.

〈축제 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현행	개정안
당연직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u>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u>
위촉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 ·<u>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u> ·서울연구원 소속 축제분야 연구원 ·축제감독 ·대학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서울연구원 소속 축제분야 연구원 ·축제감독 ·대학교수

3) 실무위원회(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명시된 실무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본부에서 제출한 실무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동 조례가 2020년 3월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세 차례 회의가 열렸음.
- 실무위원회는 축제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축제정책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에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운영을 권고하고 있음.

4) 축제 개최 용역 계약(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축제 개최를 위하여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축제 주최자에게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과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에 대해 의무를 부과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용역 계약시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은 용역사로부터 불공정한 계약조건이나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받는 일이 빈번하다고 하는 바, 이는 조례 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의 명문화와 예술계의 관행상 이루어지던 계약 외의 노동 등 불공정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7조제2항에서 축제 주최자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다른 사회보험보다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예술인은 구두로 계약을 맺으며, 단기계약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별도로 예술인이 사업주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반해 조례 개정을 통해 축제 주최자가 고용에 있어 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를 하게 된다면 예술인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은 「대한민국헌법」¹⁾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의 견지에서 형사법 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인 성희롱·성폭력으로 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2018년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사건²⁾으로부터 문화예술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3항을 신설하였으나 여전히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은 해결되기는커녕 공론화조차 어려운 현실이므로³⁾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해 축제주최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은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발 미투를 시작으로 고은, 이윤택, 김기덕, 조재현, 故 조민기 등 유명 남성 예술인들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며 파장을 낳은 사건

3) 최현지 기자, '미투 3년...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아직도 말 꺼내기 어려워', 여성신문, 2021.1.29.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35>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12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3월 10일

발 의 자 : 최영주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소영, 김춘례,
김태호, 노승재, 신원철,
안광석, 오한아, 유 용,
이중환, 최기찬, 황규복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예술인 복지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축제 주최자와 참여 예술인간의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계약체결시 고용보험료 납부,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 축제 참여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노력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또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축제 참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조항 신설 (안 제3조제2항).
- 나.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조항 정비(안 제7조제1항~제7조3항, 제9조제1항).
- 다. 실무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조문 정비(안 제12조제5항).
- 라. 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규정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술인 복지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따라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으로 한다.

제7제3항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제2항 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인 공동위원장이 된다”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로 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리) ① 조례 제 16조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축제를 개최하는 자 또는 그 축제 개최를 대행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이하, “축제 주최자”라 한다)은 축제개최를 위하여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면에 의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참여 예술인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축제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 「고용

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한다.

③ 축제 주최자는 관련 법령 및 협약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고, 참여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사용 세부내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축제의 주최자는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의 책무) <u>서울특별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7조(축제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하생략)</p> <p>② <u>당연직</u> 위원은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u>위촉직</u> 위원은 <u>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울연구원 소속 축제분야 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1명과 축제감독, 대학교수 등 문화예술 또는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u>예술인 복지법</u>」 제4조에 따라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7조(축제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하 현행과 같음)</p> <p>② <u>당연직</u> 위원은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로 하고, <u>위촉직</u> 위원은 <u>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서울연구원 소속 축제분야 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1명과 축제감독, 대학교수 등 문화예술 또는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③ -----</p>

현행	개정안
<p>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9조(위원장 등) ① <u>위원장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②~④ (생략)</p> <p>제12조(실무위원회) ① (생략) <u>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인 공동위원장이 된다.</u></p> <p>③~④ (생략)</p> <p>⑤ <u>실무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u></p> <p><u><신설></u></p>	<p>----- --, <u>당연직 위원의 임기는</u> -----, -----, -----.</p> <p>제9조(위원장 등) ① <u>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u>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u>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u></p> <p>제17조(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리) ① <u>조례 제16조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축제를 개최하는 자 또는 그 축제 개최를 대행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하, “축제 주최자”라 한다)은 축제개최를 위하여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면에 의한 공정한</u></p>

현행	개정안
<p><u>제17조~제21조</u> (생략)</p>	<p><u>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참여 예술인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p> <p><u>② 축제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한다.</u></p> <p><u>③ 축제 주최자는 관련 법령 및 협약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고, 참여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사용 세부내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u>④ 축제의 주최자는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u></p> <p><u>제18조~제22조</u> (현행 제17조부터 제21조와 같음)</p>